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14,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독일의 비경상적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독일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서는 흔히 ‘비경상적인 사업 거래(Extraordinary Business Transaction, 이하 “EBT”)'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BT 는 기능 이전 등과 같이 막대한 이익을 독일 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독일 입법자들은 이를 엄격하고도 특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시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비경상적인 사업 거래(EBT)에 대한 이해

EBT 는 독일 세법상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업 거래 (ordinary business transactions)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상의 영업활동을 벗어나 과세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독일 세법상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EBT 에 해당됩니다.

- 기업 내부의 사업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예: 세무조사에서는 장기 대출 계약을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 이전
- 기능과 위험의 중대한 변경과 관련된 자산의 이전 또는 제공 (예: 기능 이전이나 사업 구조조정)
- 이전가격과 관련된 사업 전략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거래
- 비용분담계약(cost allocation agreement)의 체결

2024년까지의 문서화 요건

독일 입법자들은 EBT에 대한 문서화에 대해 항상 일반적인 통상 거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통상적인 이전가격 문서화는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후 60일 이내에 작성 및 제출이 (2024년까지의 기존 규정 기준) 가능한 반면, EBT에 대해서는 선제적이며 동시적인 문서화 요건이 적용되어, 해당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문서를 작성하고,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EBT 문서가 30일 이내에 제출되는 한 세무당국 입장에서 문서가 적시에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이전가격 보고서가 기한 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전소득을 재산정하고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의 적시성 인정 기준과 함께 특정사례에서 지연된 보고서가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문서화 요건

2025년 1월 1일부로 독일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문서화 의무에 대한 중요한 규제 변경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EBT뿐만 아니라 일반 이전가격 문서(Local file 및 새롭게 도입된 거래 매트릭스와 마스터 파일 포함)에 대해서도 제출 기한이 30일로 단축되었고, 독일 과세당국은 이전과 달리 세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전가격 문서화(일반 및 특수 거래 모두)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의무 제출 요건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전가격문서요청이 없더라도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ocal file을 제외한 이전가격문서(EBT, 마스터파일, 거래 매트릭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제출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된 건(2025년 1월 1일 이전 오픈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독일 과세당국의 현지 데이터 센터 운영 관련 세무조사 강화

독일 과세당국, 특히 연방 중앙 세무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 BZSt)은 독일 내 위치한 그룹 내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로 두 가지 핵심 측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컴퓨팅 용량(서버 용량 포함) 제공과 관련된 특관자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방법론

2. 독일 데이터 센터와의 컴퓨팅 용량 관련 특관자 거래에서, 해당 데이터 센터가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의 독일 내 고정사업장(P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는 컴퓨팅 용량 관련 특관자 거래의 이전가격 방법론

이전가격 실무에서는 그룹사 간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용량 제공을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없는 루틴 활동으로 간주하며, 비용 기반 접근법에 따라 적정 마크업을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독일 과세당국은 그룹 내 데이터 센터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시장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위치 자체만으로도 시장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단순한 용량 제공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의 제 3 자 고객의 수익을 기준으로 보상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내 데이터 센터는 고유한 기능과 위험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그룹사 간 거래 특성상 용량 판매가 보장되어 있어 시장 위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제 3 자거래 및 가격 정보(comparable uncontrolled pricing data)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독립된 회사 간의 비교가능한 거래가격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비교가능제 3 자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내 데이터 센터와 그룹사 간 컴퓨팅 용량 관련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들은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수 있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그룹 내 데이터 센터의 기능 및 위험 프로필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Employed)이나 사용된 컴퓨팅 용량 기준 보상 방식 등을 통한 보상 방식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상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양자 간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고정사업장 이슈

독일 세법(Fiscal Code) 제 12 조 제 1 문 및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고정사업장(PE)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면에 고정된 사업 설비 또는 설치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해당 설비 또는 설치물은 기업의 활동에 기여해야 하며, 납세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일시적 통제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 인력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가격 관점에서는, 독일과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된 계약 상대방(예: 특수관계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이 위치한 국가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s)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해외 콘텐츠 제공자의 소유가 아니라 독일의 별도 법인에 의해 운영되며, 해외 콘텐츠 제공자가 단지 가상 접근만을 통해 컴퓨팅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독일 과세당국은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OECD 의 Authorized OECD Approach(AOA), 독일

해외세법(AStG) 제 1 조, 그리고 독일의 고정사업장 이익배분령 (Betriebsstättenverordnungsverordnung)을 기준으로 해당 데이터 센터에 귀속될 수 있는 이익의 규모를 평가해야 합니다. 독일은 기능의 존재를 고정사업장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며, 특히 해당 기능의 물리적 구현 존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현지에 실질적인 인적자원 기능이 없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해당 데이터 센터에 귀속되는 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가상 사업 모델 (Virtual Business Model)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 시 해당 데이터 센터가 해외 콘텐츠 제공자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양자간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4-법규국조-3981

제목: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갑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은 국조법 제 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부담세율은 15% 이하임
- 다만, 홍콩법인은 '23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 전액을 모회사인 갑법인에 실제 배당함에 따라 국조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없어 갑법인에게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음

2. 질의요지

-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이익 잉여금 전액을 국내 모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국조법 제27조제1항에 의해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03 관세

美 트럼프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

1. 개요

-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동향

2. 트럼프 주요 관세 정책

1)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 2025년 4월 10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증가 관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 대신,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명령.

2) 대중국 상호관세율의 인상 (84% → 125%)

- 미국 행정부는 과거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무역 상대국인 미국의 조치에 보복할 경우, 미국은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즉각 보복 조치로 응수하였으며,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에 재차 대응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인상하였음. 한편 다른 국가들이 무역 관계 개선에 협력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밝혔음.
-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대중국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고, 이는 중국정부가 경솔한 보복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누구든 미국을 보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계 맞받아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로서, 중국산 수입물품은 본 추가 조치로 인하여 마약 관련 추가관세율 20%에 상호관세율 125%를 더한 총 145%의 증가세율이 모든 중국산 물품에 부과되며, Super 301조에 따른 물품별 추가세율까지 합산 과세됨.

3) 중국발 저가 수입물품 과세방안 강화

- 중국에서 출발한 800달러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를 기존 30%에서 90%로 3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함.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800달러 이하 상품은 우편물 1개당 75달러 또는 상품가의 9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6월 1일부터 우편물 1건당 부과되는 관세 역시 50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됨. 이 조치는 중국이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반격으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발표된 대응 조치임.
- 이번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 테무(Temu), 쉬인(Shein)등 저가 물품을 앞세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력은 저렴한 가격, 우수한 품질, 빠른 배송으로 알려져 있어,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본 조치로 인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